



인권노동 방침

인권노동 방침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의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관련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UN, ILO 등 노동관계 국제 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기본가치로 실천한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본 방침과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와 의사소통한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직원, 고객, 주주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글로벌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 및 노동관련 전 프로세스를 관리·운영한다. 현지 법규가 충돌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운영지침

제 1조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욕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인되면, 상벌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제 2조 (강제근로 금지)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 노동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채용 시 임직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 3조 (아동고용 금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 근로와 초과 근로도 이에 해당한다. 실습생(훈련/인턴/학생근로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4조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性)정체성,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나아가 RBA 권고 기준에 따라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제 6조 (임금 및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징계 조치로서의 감급(감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의 실적 향상을 꾀하며,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7조 (결사의 자유)

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8조 (법규준수)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 동 규 범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래의 RBA 행동규범을 충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RBA 행동규범

1. 노동

·자발적 취업 ·연소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과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금지/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2. 안전보건

·산업 안전 ·비상사태 대응 방안 ·산업 재해 및 질병 ·산업위생 ·육체 노동
·위생, 식품 및 주거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3. 환경

·환경 허가 및 보고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유해 물질 ·고형 폐기물 ·대기 배출
·물질 규제 ·물 관리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4. 윤리

·사업 청렴성 ·부당 이익 금지 ·정보 공개 ·지적 재산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개인정보 보호

5. 관리시스템

·기업의 준수 의지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위험 평가 및 관리
·개선 목표 ·교육 ·커뮤니케이션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감사 및 평가
·시정 조치 절차 ·문서화 및 기록 ·공급업체 책임